

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80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12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환경교육 계획수립과 이행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환경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추가(안 제12조)
- 나.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(안 제14조)
- 다. 환경교육센터 유효기간 부칙 삭제(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 -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 -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4】
- 바.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25. 6. 15. ~ 2025. 7. 25. 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 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의 제목 “(회의 등)”을 “(위원회의 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4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조례 제2652호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환경정책과
입	환경정책과장	김 성 수
안	환경정책팀장	홍 석 재
자	담 당 자 (연 락 처)	송 명 길 (481-2886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회의 등) ① ~ ⑥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2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u></p>
<p>제14조(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	<p>제14조(존속기한) ----- --- <u>2030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</p>
<p>조례 제2652호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</p>	<p>조례 제2652호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</p>
<p>제2조(유효기간) 「<u>환경교육진흥법</u>」에 따라 기 지정된 <u>안산시 환경교육센터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6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><삭제></p>